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7년 6월 7일
- 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7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, 조례 미반영 사항은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(안 제12조)
-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삭제
 - 공개의 청구방법(안 제8조), 공개방법(안 제9조), 공개의 여부 결정(안 제10조)
- 심의회 기능 신설(안 제14조제2호)
 - 안 제9조제5항 내용 중
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”를 이기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목)
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,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공개의 청구방법, 공개방법, 공개의 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은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”과 중복되어 삭제 하였으며,
 - 안 제9조제5항의 “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,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”를 안 제14조제2호로 이기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12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” 제12조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,
- 본 조례안은 「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, 중복 사항을 삭제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적합하게 개정 정비한 것으로 사료되며,
 - 그밖에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상위법에 중복되는 내용은 정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(안 제12조)
- 나.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 정비(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10조)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1) 「정보공개법」,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- 4)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7. 5. 4. ~ 5. 24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와”를 “다음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“총괄부서”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구”를 “집행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”을 “법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제7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7조”로, “1”을 “어느 하나”로 한다.

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정보공개심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부위원장”을 “부위원장 각 1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행정국장으로 하고”를 “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총무과, 기획예산과장, 민원여권과장”을 “행정국장, 총무과장, 기획담당관, 민원여권과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방법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“총괄부서”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. 이에, 행정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다.</u></p> <p>5. 6. (생략)</p> <p>제4조(정보공개 원칙) <u>구에서 보유·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6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<u>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</u></p>	<p>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<u>다음과</u>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“총괄부서”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.</u></p> <p>5.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정보공개 원칙) <u>집행기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9조제1항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6조(행정정보의 공표) ① <u>법 제7조</u>----- ----- -----<u>어느 하나</u>----- -----</p>

의 구체적 범위,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조(공개요청방법)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청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명칭,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) 및 연락처

2.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

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,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개방법)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·시청하게 하거나 사본·복제물의 교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〈삭제〉

〈삭제〉

부 등에 의한다.

② 전자적 형태로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는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,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, 열람·시청하게 하거나 사본·출력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.

③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·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.

제10조 (공개의 여부 결정)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

〈삭 제〉

없는 행정정보는 즉시 공개한다.

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공개의 가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
따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
연장할 수 있으며, 그 사실을 청구
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, 장소 및 공개방법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제1항의 기한까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⑥ 제1항의 즉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
1.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

2.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

3.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정보공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(생략)

⑤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, 기획예산과장,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.

⑥ (생략)

제14조(심의회 기능)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3. (생략)

제12조(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) ① -----

----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-----
-----.

② ----- 부위원장 각 1명-----

-----.

③ ----- 위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행정국장, 총무과장, 기획담당관, 민원여권과장-----
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심의회 기능) 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의 각 호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공개방법

3. 4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)